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83
------	------

2025.09.08.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0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5년 08월 14일

3.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5.09.0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실장 주용태)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도심형 고부가가치 주얼리산업의 육성을 위해 주얼리업체 집적지인 종로1~4가 일대(서울의 45.5%, 전국의 22%차지)를 2010년 1월 ‘종로 귀금속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 주얼리 디자인 개발, 콘텐츠 제작 및 판로 개척 지원, 품질향상을 위한 감정 지원, 업체 간 협업 지원 등을 위해 서울주얼리지원센터(1관-’15년

7월, 2관-’ 17년 6월 개관)를 건립하여 주얼리산업 육성 허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 현재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이 ’ 25. 12월 만료 예정으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재위탁을 추진하기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개요

- 사 무 명: 서울주얼리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2026. 1. 1.~2028. 12. 31.(3년)
- 위탁유형: 시설형 민간위탁
- 위탁방식: 재위탁(공개모집 및 적격자선정심의회 심사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897백만원(’ 26년 예산안 기준)

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및 제23조의2(사무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주얼리산업관련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민간자원 연계 활용이 수월한 기관에 센터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주얼리 사업체의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주얼리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다. 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주얼리지원센터(1관·2관) 시설 운영 및 관리 총괄
- 주얼리 산업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기획·운영
- 주얼리 판로 다각화 지원 사업 기획·운영
- 소공인, 창업자 등을 위한 제작-유통 원스톱 공간 운영
- 기타 주얼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사무 등

라. 위탁시설 개요

구분	개관	위치	규모	연면적(㎡)	주요 사무
1관	'15. 7.	종로구 서순라길 89-8	지상 2층 지하 1층	338	<산업지원 및 감정지원> - 주얼리 혁신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 - 경영컨설팅 및 라이브러리 운영 - 주얼리 감별 및 분석지원
2관	'17. 6.	종로구 서순라길 83	지상 2층 지하 2층	449	<전시 및 공유공간 운영> - 쇼룸 및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으로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 - 포토스튜디오, 시제품 제작실 운영

마. 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

-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25. 3월~7월): 85.46(우수)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25. 7. 18):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략산업의 선정·육성 및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2(사무의위탁) ① 시장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경제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6년 민간위탁금 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서울주얼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2025.12.31.)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¹⁾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2.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 서울주얼리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국내 최대 주얼리 산업 집적지인 종로²⁾에 조성된 시설로, 서울의 대표적 도심형제조업인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경영컨설팅, 판로 개척, 시제품 제작 지원, 감별·분석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국내 주얼리 산업은 2000년대 이후 ▶세계 경기 불황과 원자재값 상승, ▶브랜드 경쟁력 약화, ▶가공기술 및 유통시스템의 낙후, ▶대형할인점 및 온라인시장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2010년대부터 중국 업체의 저가공세, 해외 명품브랜드 판매 증가 등으로 국내 업체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어 주얼리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됨.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2023년 기준 국내 주얼리 사업체 16,298개 중 37.1%(6,049개)가 서울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종로에는 전국 사업체의 19.8%, 서울 사업체의 53.2%(3,219개)가 밀집해 있음(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2025), 「한국 주얼리 산업 사업체수 동향 2023」).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종로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로구 돈화문로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2010.1.)하고, 민간 중심으로 개발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는 ‘산업공동체 중심의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2012.8.)하였음.
- 이후 ‘종로 주얼리 앵커시설 설립 및 운영계획’ (2013.8.)을 통해 센터 1관(2015.7.개관)과 2관(2017.6.개관)을 순차적으로 조성하였으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현황 >

구 분	제1관	제2관
개 관 일	'15. 7. 11.	'17. 6. 26.
위 치	서울시 종로구 서순라길 89-8	서울시 종로구 서순라길 83
건립규모	연면적 338㎡, 건립비 3,613백만원	연면적 450㎡, 건립비 4,923백만원
공간구성	지하1층, 지상2층 (B1 첨단기기실, 1F 라이브러리, 2F 상담실)	지하2층, 지상2층 (B2 시제품제작실, B1 포토스튜디오, 1F 쇼룸, 2F 비즈니스라운지·정보카페·화상회의실)
주요기능	협업활성화, 감정지원, 인력양성(제조), 경영컨설팅, 판로 개척지원 등	판로 개척 지원, 브랜드화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
위탁방식	시설형(예산지원형)	
수탁업체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23.3.1.~25.12.31.)	
사업예산 ('25년)	1,350백만원 (사업비 771백만원, 운영비 145백만원, 인건비 434백만원)	
인력현황	9명(센터장 1, 팀장 2, 직원 6)	
전 경		

- 당초 1관과 2관은 수탁법인을 달리하여 1관은 시설형(예산지원형) 위탁, 2관은 자립형 위탁으로 운영했으나, 2관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포기(2020)하여 사실상 시설형 위탁으로 운영되었음.

- 또한 지난 2020년에 있었던 1관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심사에서 지원사업의 효율성·연계성 강화를 위한 통합 운영이 권고됨에 따라 센터는 2023년 3월부터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에 의해 시설형 위탁으로 통합운영 중임.
- 한편 센터의 지난 3년간 민간위탁 성과를 살펴보면 혁신성장지원, 판로 지원, 주얼리주간 개최, 감별·분석 지원, 공용공간 운영 및 쇼룸 기획전 지원, 홍보채널 운영 등에서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 성과 >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말)
혁신성장 지원	122개	45개	47개	30개
멘토링교실	1,438건	532명	750명	156명
판로지원	45개	-	25개	20개
협업지원	10건	4건	4건	2건
주얼리주간 개최	-국제주얼리컨퍼런스 463명 참여 -국제주얼리&엑세서리쇼 84개업체 참가지원 -반지워크인서울 83개업체 지원	-국제주얼리컨퍼런스 250명 참여 -국제주얼리&엑세서리쇼 5개업체 참가지원 -반지워크인서울 43개업체 지원	-국제주얼리컨퍼런스 213명 참여 -국제주얼리&엑세서리쇼 29개업체 참가지원 -반지워크인서울 40개업체 지원	하반기 개최예정
감별·분석 지원	3,457건	1,554건	1,414건	489건
공용공간 운영	7,090건	2,832건	3,357건	901건
쇼룸 기획전 지원	43회, 73개업체	3회, 3개업체	23회, 38개업체	17회, 32개업체
홍보채널 운영	1,616건	527건	527건	562건

-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센터는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 (2025.7.)에서 85.46점을 획득하는 등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3. 민간위탁 재위탁의 적절성 여부

- 동 동의안은 센터의 ▶1·2관 시설 운영, ▶유망 K-주얼리 브랜드 발굴 및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판로확대 및 유통 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제품제작실·포토스튜디오 등 창업·소공인 지원공간 관리·운영 등의 사무를 재위탁(2026.1.1.~2028.12.31.)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사무는 국내외 주얼리 산업 특성과 개별 주얼리 브랜드 및 업체에 대한 이해와 유통·마케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행정사무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동 사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³⁾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지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분류됨.
- 또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⁵⁾와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⁶⁾에서도 주얼리 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사업의 운영을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3)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제23조의2(사무의 위탁) ② 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6) 제7조(민간위탁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귀금속산업의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위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따라서 센터는 주얼리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업 및 경영지원, 판로개척 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주얼리 산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운영을 지속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결과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가능한 상황이나, 서울시는 현 수탁기관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독점의 우려가 있다는 시의회의 지적⁷⁾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수탁기관 현황 >

1관		2관	
계약기간	수탁기관	계약기간	수탁기관
'15.04.~ '17.12.	서울주얼리진흥재단 (現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신규위탁)	'17.03.~ '20.03.	주얼리문화공간사이 (신규위탁)
'18.01.~ '20.12	서울주얼리진흥재단 (現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재계약)	'20.03.~ '22.02.~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재위탁)
'21.01.~ '23.02.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재위탁)	'22.03.~ '23.02.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재계약)
'23.03.~ '25.12.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통합 후 신규위탁)		

- 그러나 현 수탁기관이 센터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는 점과, 주얼리 산업 내 15개 직능별 협·단체가 통합되어 설립된 비영리기관이라는 점에서 타 기관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수탁기관의 독점적 운영으로 인해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7)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3.11.13.)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083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는 도심형 고부가가치 주얼리산업의 육성을 위해

주얼리업체 집적지인 종로1~4가 일대(서울의 45.5%, 전국의 22.2% 차지)를 2010년 1월 ‘종로 귀금속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나. 주얼리 디자인 개발, 콘텐츠 제작 및 판로 개척 지원, 품질향상을 위한 감정 지원, 업체 간 협업 지원 등을 위해

서울주얼리지원센터(1관-'15년 7월, 2관-'17년 6월 개관)를 건립하여 주얼리산업 육성 허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다. 현재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이 '25. 12월 만료 예정으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재위탁을 추진하기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개요

- 사 무 명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2026. 1. 1.~2028. 12. 31.(3년)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위탁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및 적격자선정심의위 심사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897백만원('26년 예산안 기준)

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및 제23조의2(사무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주얼리산업관련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민간자원 연계 활용이 수월한 기관에 센터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주얼리 사업체의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주얼리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다. 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주얼리지원센터(1관·2관) 시설 운영 및 관리 총괄
- 주얼리 산업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기획·운영
- 주얼리 판로 다각화 지원 사업 기획·운영
- 소공인, 창업자 등을 위한 제작-유통 원스톱 공간 운영
- 기타 주얼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사무 등

라. 위탁시설 개요

구 분	개 관	위 치	규모	연면적(m ²)	주요 사무
1관	'15. 7.	종로구 서순라길 89-8	지상 2층 지하 1층	338	<산업지원 및 감정지원> - 주얼리 혁신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 - 경영컨설팅 및 라이브러리 운영 - 주얼리 감별 및 분석지원
2관	'17. 6.	종로구 서순라길 83	지상 2층 지하 2층	449	<전시 및 공유공간 운영> - 쇼룸 및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으로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 - 포토스튜디오, 시제품 제작실 운영

마. 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

-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25. 3월~7월) : 85.46(우수)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25. 7. 18) : 적정

3.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략산업의 선정·육성 및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2(사무의위탁) ① 시장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경제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6년 민간위탁금 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실 뷰티패션산업과 석수현 (☎2133-8776)